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System of the University's Sponsored Research

고 성 효* · 김 경 철**

(Ko, Seong-Hyo · Kim, Kyung-Chul)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연구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V. 결론

I. 서론

최근 국립대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과세권자의 법인세 신고 안내 및 가산세 등의 추정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국립대학교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120조에 의해 가산세 적용배제로 과세권자와의 마찰이 없었다. 그러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관리와 지적재산권인 경우, 국립대학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었으며, 세무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과세권자와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사례로 2009년초에는 사립대학교중 산학협력단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 대학은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도 과세권자와의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학술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연구용역의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산학협력단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권자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산학협력단이 세무상 문제점을 찾기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고찰을 하고 여기서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관점을 공공재로 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현행 세법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 실행예산 중 연구보조비 및 파생되는 부가가치세, 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법상 문제점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문헌 및 국내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교육 및 국가 초석의 수단으로 보고 조세지원차원에서 연구보조비인 경우 세법상 비과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인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영구적 제도로 전환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사례에 있듯이 현행 세법상 기부금제도의 확대 및 일률적 적용을 주장하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제도의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논쟁인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분류로 인해 과세권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고찰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 결과 중 산학협력단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현행 세법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교육, 즉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이 국가 경쟁력이 초석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에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과세권자의 징수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볼 때 공공재 성격인 학술연구용역이 바람직한 적정 산출량을 생산해 낼 수 있을지 또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 이러한 부분이 세무 행정적으로 낭비적 차원이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세법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2.1. 연구용역 수익사업에 대한 고찰

본 절에서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대한 고찰 및 수익사업 중 연구개발업(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중심으로 살펴보고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사회 공익적 역할 중 대표적인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설립등에 대하여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술연구용역부분이 현행 세법과 어떤 마찰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 산학협력단이 설립배경 및 설립이후 규모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의 구분은 세무상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현행 세법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구용역 수익사업에 대한 고찰로서 우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대해 고찰하고 비영리법인중에서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국세청 질의서를 기반으로 수익사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1.1. 현행 법인세법상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1) 관련문서[법인세과-787]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고찰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수익·수익사업의 구분은 계약서 및 협약서상 근거한 대가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표2-1]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계정과목 및 계산서 발행 여부의 판단근거가 된다.

[표2-1] 대가성유무에 따른 구분

구 분	대가성 있는 경우	대가성 없는 경우
계정과목	산학협력수익	지원금 및 기부금수익
계산서 발행	계산서 발행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인세법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여기서 연구의 결과물은 연구비로 취득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로 나눌 수 있다. 대가관계 유무의 판단은 유형적 결과물은 결정적 판단근거가 되지 않으나 무형적 결과물은 대가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대가성 유무 판단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결과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단순히 연구 성과가 아니라 연구 수행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형태인지 용역보고서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실 판단하는 과세권자의 성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결과물의 귀속이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이 일정비율로 배분되어 있다면 결과물의 귀속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외에도 공동수급 연구용역인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관계 없는 연구용역을 체결되었으나 1순위 수급자와 공동수급자간 계약에 있어서 1순위 수급자가 대가관계가 없는 연구용역이다 하더라도 결과물의 귀속을 계약서상 명시하여 이를 통해 국가기관에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원계약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수익사업으로 바뀌게 된다.

2.2. 산학협력단

2.2.1. 산학협력 개념 및 산학협력단 설립취지

산학협력의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지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정부 사이에 상호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가혁신전략으로서 대학-산업-정부의 연계체제라는 “삼중나선(triple helix) 모델¹⁾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유전자가 이중나

1) Etzkowitz, Henry & Leydesdorff, Loet, 1997., 「University and the Global Knowledge

선 구조를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환경과 대화하며 생명체를 발전시켜가는 것처럼 혁신적인 기준과 지식도 산학관 사이의 삼중나선 구조가 형성될 때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학술진흥재단,2007,대학산학협력백서,pp3-4)

산학협력단의 법률적 근거에서 개념을 살펴보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대학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이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에게 귀속하며,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익 또는 잉여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의 적용상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2)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는 현행법상 학교에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결국, 학교의 입장에서는 산업체 등과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의 책임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법인격을 갖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권리의무의 행사를 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또한 그동안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지원체제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대학의 모든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였다.(2005대학산학협력백서, 2005, pp498-499)

2.2.2. 산학협력단 현황

산학협력단 현황을 거점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최근 4개년도의 운영보고서를 살펴보고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이 대가성이 있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행 세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대학에서 연구용역에 대해 조직내에서 업무처리해 오다가 산학협력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구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공립대학

Economy:Triple He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London: Pinter. p.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대학산학협력백서」, pp. 3-4 재인용)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학교기업의 재정관리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관리 불일치를 인식 내지 적극적 대응을 못한 사례를 현행 세법과 관련하여 거점국립대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세무관련 실태조사를 하였다.

[표2-3] 거점국립대 산학협력단 세무관련 실태조사

질의내용	대학별 산학협력단	
	충남대	강원대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형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2. 사업자의 형태 변경 시점	2004년 이전	면세사업자
3. 법인세신고 방법	외부전문가의도움	2007년결산이전 산단자체신고 2008년결산이후 외부전문가의 도움
4.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점	2005년 이후	2008년 이후
5.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계기	최초 법인 설립시부터 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세무 대한 교육 부족 *회계사 및 세무사,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면담과정에서 신고 필요 인식
6. 법인세 신고에 해당하는 수입의 범위	이자수익, 기타(분석사업)	이자수익, 기타(학교기업운영수익)
7. 법인세 미신고 및 연구용역수익을 법인세 범주에 넣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국체청 교육 및 홍보 미비 *산학협력단은 국립대학교의 산하기관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여 법인세 등의 신고의무 없다고 인식	*교육과학기술부,국체청 교육 및 홍보 미비 *기타(신고의무 인식하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성 유무 판단 애매, 많은 연구요역을 수익/비수익 구분경리 어려움
8.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방법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외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외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
9. 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준	연구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음	연구용역 중 대가여부 판단 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 (수익사업으로 분류 기준이 불명확)
10. 연구용역수익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 사유	연구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음 차후는 신고할 예정	*수익/비수익 분류 명확한 근거 미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액 손금산입으로 인해 과세표준 '0' 이므로 구분경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1. 대가없이 출연금 형태의 계산서 발급 여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12. 외부기관(국세청,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여부	*계산서 발행 연구용역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 법인세 신고 해야함 에 대한 질의*법인세 신고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중	*문제 제기 없음
13. 기타 사항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 학교의 총장의 업무 대리 기관임에도 계약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아 계약업체와 문제 발생이 잦음 법적 공시가 필요	*수익/비수익사업에 대한 교과부와 국세청 협의 통한 명확한 사례집 발간 요청 *산학협력단 설립이후 신고의무 있음 *산학협력단은 정부의 권유로 설치된 별도법인으로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음에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 적용 필요 *구분경리에 대한 직원교육 및 내부 회계 시스템 정비 필요

질의내용	대학별 산학협력단	
	경상대	충북대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형태	면세사업자	과세/면세겸업사업자
2. 사업자의 형태 변경 시점	면세사업자	2006년 이후
3. 법인세신고 방법	산단자체신고	외부전문가의 도움
4.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점	2007년이후	2007년 이후
5.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제기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안내
6. 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수입의 범위	이자수익	이자수익, 연구용역수익,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료, 기타(동물의료센터 수익)
7. 법인세 미신고 및 연구용역수익을 법인세 범주에 넣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산학협력단은 국립대학교의 산하기관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여 법인세 등의 신고의무 없다고 인식	
8.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방법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외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
9. 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준	연구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음	연구용역 중 대가여부 판단 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 (수익사업으로 분류 기준이 불명확)
10. 연구용역수익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 사유		
11. 대가없이 출연금 형태의 계산서 발급 여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12. 외부기관 (국세청,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여부		
13. 기타 사항		

질의내용	대학별 산학협력단	
	전남대	제주대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형태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2. 사업자의 형태 변경 시점	2005년 이후	2004년이전
3. 법인세신고 방법	외부전문가의 도움	외부전문가의 도움으로 신고
4.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점	2005년 이후	2004년 이전
5.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	*결산시 자문 회계사의 안내 *매년 관할 세무서공의법인 세무안내 책자 요청하여 참고	*공인회계사의 자문에 따라 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으로 법인세 납부 금액 없음
6. 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수입의 범위	이자수익	이자수익
7. 법인세 미신고 및 연구용역수익을 법인세 범주에 넣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국체청 교육 및 홍보 미비 *산학협력단은 국립대학교의 산하기관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여 법인세 등의 신고의무 없다고 인식 *수익사업 개시 후 법인세신고 해야 하나 인력부족 및 시스템 정비등의 문제 산재	*교육과학기술부,국체청 교육 및 홍보 미비
8.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방법		이자수의 원천징수금액 기납부액으로 환급 후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설정
9. 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준	연구용역 중 대가여부 판단 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 (수익사업으로 분류 기준이 불명확)	기타(연구용역에 대한 분류 별도 하지 않고 운영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는 수준에서 법인세 신고)
10. 연구용역수익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 사유	대부분의 연구용역은 목적사업이며,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 비수익으로 분류	연구용역이라 할지라도 국가보조금등으로 인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11. 대가없이 출연금 형태의 기부금 수령 증빙으로 계산서 발급 여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12. 외부기관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여부	관할세무서에 요청으로 법인세 무신고 사유 및 07.08년 계약서 자료 제출 -2009년 결산부터 일부 수익사업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구분경리하여 법인세 신고하기로 함	관할세무서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에 대응 소명하였으나 답변 없음(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으로 불거짐)
13. 기타 사항	*법인세법 제2조에 의해 국가기관일 때 법인세 부과하지 않지만,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중앙관리를 하면서부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문제점 발생 대책 마련 시급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빠른개정과 국세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필요	세무적인 사례집이나 지침이 필요 교과부와 협의하에 이에 대한 조속한 지침이나 사례집 발간이 시급 또한 회계처리지침 필요

질의내용	대학별 산학협력단	
	전북대	서울대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형태	과세/면세겸업사업자	면세사업자
2. 사업자의 형태 변경 시점	2004년 이전	면세사업자
3. 법인세신고 방법	외부전문가의 도움으로 신고	산단 자체 신고
4.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점	2005년 이후	2006년 이후
5.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제기	창업보육센터만 법인세 신고함	이자소득 발생순에 대한 선급 법인세 환급 신청
6. 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수입의 범위	이자수익, 장비 및 시설 임대	이자수익
7. 법인세 미신고 및 연구용역수익을 법인세 범주에 넣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우리 산단은 면세사업자로 법인세 신고의무 없다
8.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방법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	기타(이자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
9. 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준	연구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연구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않음	연구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하지않음
10. 연구용역수익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 사유	비수익사업으로 봄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용역이므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 법인세 신고 해당없음
11. 대가없이 출연금 형태의 기부금 수령 중병으로 계산서 발급 여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12. 외부기관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여부		
13. 기타 사항		*국립대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무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족 *국립대학의 세무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필요

질의내용	대학별 산학협력단	
	부산대	경북대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형태	과세/면세겸업사업자	면세사업자
2. 사업자의 형태 변경 시점	2007년 겸업사업자로 변경	면세사업자
3. 법인세신고 방법	외부전문가의 도움으로 신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으로 신고
4.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점	2008년 이후(2006~07년 기한후신고)	2005년 이후
5.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계기	이자소득 발생순에 대한 선급 법인세 환급 신청	비영리법인이지만 법인세 신고의무 있음 확인
6. 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수입의 범위	이자수익, 기술이전 및 기술사용료, 성과활용사업, 교육운영관련사업, 장비임대, 창업보육센터 관련 수익 등	이자수익, 기술이전 및 기술사용료, 성과활용사업, 교육운영관련 사업
7. 법인세 미신고 및 연구용역수익을 법인세 범주에 넣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국체청 교육 및 홍보 미비	*교육과학기술부,국체청 교육 및 홍보 미비
8.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방법	기타(이자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 =>2007년 이전 원천징수로 같음	이자소득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
9. 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준	연구용역중 대가성있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연구용역중 대가성있는 연구용역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분류 기준 미정확
10. 연구용역수익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 사유	기한후 신고이후는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전에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수익사업이 아니라 판단함	연구용역 수익/비수익 분류 명확치 않음
11. 대가없이 출연금 형태의 기부금 수령 중립으로 계산서 발급 여부	2008년 이후에는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만 계산서 발급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 발급
12. 외부기관(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여부	관할세무서에 대한 국세청 감사에 따른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요구=>기한 후 신고 진행중	
13. 기타 사항	*국립대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무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족 *국립대학의 세무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필요	세무 관련환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침이나 기준 필요 및 실무교육 필요

위 설문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립대학의 산하기관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최근 관할세무서와의 지적등에 의해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계산서 발급에 있어서도 주관기관에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준이 불명확하며, 이에 따라 과세권자와 많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2.3.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과세에 대한 주요이슈

최근 산학협력단 역할의 증대에 따라 연구비 중앙관리로 재정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과세권자의 산학협력단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그러한 사례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중 과거에는 부동산임대료 및 장비임대료에 대해 한정적으로 생각했으며 그러한 부분은 이미 산학협력단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제반 세무신고를 해오고 있다. 그 이외에 학교기업 등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며 수익 대비 비용의 관점에서 볼때 크게 세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장에서 볼때 그 재원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등 제반 세무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에 대한 신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과세권자와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반적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같은 업종의 다른 영리법인과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의 세밀한 검토 없이 당연히 비과세로 여겨 과세권자와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에 사립대학교중 일부 산학협력단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세권자의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추정당하였고 국립대학교중 일부 대학이 가산세 문제 및 학술연구용역이 수익사업으로 보면서 법인세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납부 문제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며, 산학협력단 재정규모로 판단해 볼 때 그 가산세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 납부 문제에 있어서도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절히 설정하여 세무신고 한 산학협력단은 혼치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각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수

의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 납부 문제는 자칫 각 산학협력단에 커다란 재정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04년도 설립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제까지 운영차익 부분을 볼 때 그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세무적 준비는 전혀 안된 상태이다. 과거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각종 가산세 및 법인세 납부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할 인적구성도 미약할 뿐 아니라 회계자료도 정립이 안 된 상태이다. 이에 산학협력단의 주요 사업인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비영리법인중 정부출연기관(오현석, 2007 및 이호성, 2005) 및 학교법인(박태승, 2004), 사립학교·산학협력단·학교기업(한창근, 2007)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기존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를 관한 선행연구 요약표

구분	수익사업	이자,배당 소득	연구 보조비	부가가치세	기부금	비영리 법인범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기타	비고
오현석 2007	구분 명확화			학술연구용역 영세율		법인세및상속 세범위일치			정부출연기관
이호성 2005	과세제도 개편			부수적사업 면세적용		법인세및상속 세범위일치	사용기준 재검토		정부출연기관
한창근 2006	고정자산처분의 위탁운영수익, 연구용 역, 학교기업 비과세	원천징수 규정제외	비과세	복지관련 공급재화면세			영구개정	주식소유제한삭제 지방세감면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중심
박태승 2004	연구용역 비과세	비과세			일원화 및 확대		범위명확화및 설정확대	공익성검증방안마련	학교법인중심
최 속 2009	범위제시				제도개선			세무확인제도확대 주식보유제한개선	
김을순 2007	범위기준 제시				제도개선		사용기준 재검토	공익성검증도입 주식소유제한완화	
안진주 2007					제도개선	법인세및상속 세범위일치	미등기법인 적용	공익성검증도입 주식소유제한개선	
최정희 2007	정의 명확화					법인세및상속 세범위일치	설정확대		
나승진 2007	범위 재정립	비과세			일원화 및 확대		손금한도폐지	구분경리폐지 증빙불비가산세적용	
노병성 2005	범위 재정립	비과세						증빙불비가산세적용	

Ⅲ. 연구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제도 중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다양한 현행 세법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3.1.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개선방안

1) 연구개발 용역대가의 과세

비영리법인이 대가 관계없이 순수하게 보조금, 기부금(출연금)을 받아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은 비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나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자연·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비지급과 연구 성과의 제공이라는 계약이 없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사립대학의 경영기반강화, 연구 활동 강화, 산학협력 강화, 국공립대학과의 형평유지 측면에서 전액 비과세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최근에 산학협력단과 과세권자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한시적 규정으로 면세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 현행 세법상 계약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술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 학술연구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협약서 및 계약서 등에 이윤이 없다. 즉 용역 대가로 받은 총수입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이다. 이런 이유로 설령 과세권자가 과세를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법인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기간귀속의 문제이던가 간접경비(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로 징수하는 경비)차이이던지 비용이 아닌 집기비품 내지 건물을 취득시 총지출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등을 통해서 계상되어 운영차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둘째, 대가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세법이 언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있어서 대가관계의 정확한 의미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출연기관의 출연금으로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경우 협약서상 대가관계를 논할수 있는 부분은 성과물이 발생할 경우 그 귀속이 지원기관인지 산학협력단인지에 따라 대가 관계를 논해야 한다. 실령 지원기관에 성과물 내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완료됨을 검수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학술연구 보고서는 그 귀속이 국가등이므로 성과물 및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 즉 국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응자금이란 부분이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술연구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시대역행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만 현행 학술연구용역을 정부등의 지원기관으로 각 대학이 수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영리기업 및 심지어 대학의 지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로 발생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대응자금이라고 하며 이때, 일반 영리기업 및 기타 기관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실무적 이유로 수익사업의 범위에 과세권자는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판단보다는 세법상 해석을 따지고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팔호에서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일정부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서 용역의뢰기관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의 시행령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연구과제 수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제물을 제출함에 있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리고 성격이 같은 연구용역인 경우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며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형태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면제시킴으로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재정건전화에 다소 도움을 줄뿐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환급 등 별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생략시킴으로서 세무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실제 비영리조직들이 종합과세 신고함으로써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100%설정하여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비영리조직의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은 물론 원천징수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국세공무원 교육원, 2006, p.8)

3.2. 연구보조비에 대한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산학협력단이 설립과 동시에 중앙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인센티브, 연구보조원의 월정액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에 있어서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비과세됨이 타당하다.

소득세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연구보조원인 경우 그 다음해 종합소득 합산신고시 정산 신고후 환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무 행정적 소모일 뿐이며 대부분의 연구보조원들은 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종합합산 신고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연구책임자인 경우 오히려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 대학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게 되어 종합소득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초석을 쌓는 연구학술에 대해 현행 소득세는 행정적 소모만 아니라 간접적 지원책인 비과세 제도마저 폐지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설립을 지원. 장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3.3.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선방안

영리기업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상계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의 경감을 받고 있지만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면세제도로 인하여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면세의 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지,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의 누적·환수 효과를 없애기 위해 학술연구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인 학술연구용역이 과소 생산되지 않게 위하여 국가예산에 많은

예산을 할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과 영세율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지원 또한 시행하여야 한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 이든 간접적인 지원이든 국회 예산 및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과세형평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술연구용역의 수행하는 기관은 대부분 대학관련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체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타 민간부분과의 경쟁관계에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용역은 국가로부터 수탁 받는데 정부의 예산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부분만큼 증액하고 다시 이를 정부 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아무 효과 없는 세무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호성, 2005, p64)

둘째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등 기관에서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하여 보다 투명한 거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 세무적으로 투명한 거래를 양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구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산학협력단의 수익 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이다. 이 부분 또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보다 활발한 지적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은 결국 국립대학교 재원으로 활용되어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의 경우 소비자조합에서 판매하는 재화인 경우 비록 국립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최종소비자가 일반 대중이며 이러한 것을 면세 내지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가격차별이 자칫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4. 기부금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4가지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류별로 비용의 인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과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 받은 기관이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서도 비용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고, 그 구분기준 또한 공익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구분되는 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우

선적으로 이러한 분류부터 기부금의 종류를 간단하고 합리적인 단계로 축소하여 기부자 및 기부 받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대상단체에 대하여 법적인 지정기준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단체들을 법률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를 통해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즉, 지정기부금단체로 한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면 그 법인이 소멸할 때까지 영원히 지정기부금 수혜단체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IV. 결 론

현행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성격과 수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고찰 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근거하여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과세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위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모든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교육분야 중 산학협력단에서 과세권자와 논쟁의 핵심이 된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세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은 재정의 지원대상이지 재정 수요 총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피 하다. 더구나 인적요소 및 물적요소가 집합되어 있는 대학을 통해 사회적 공공재인 학술연구 진흥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공공재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은 단순한 공공재가 아닌 국가 초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재인가에 대한 논리적 고찰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연구학술연구용역 등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 뿐만 아니라 간접적 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간접적 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가장 이유는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 과세논쟁에 대해 파생된 문제로 비영리조직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관점을 전환하고자 한다. 즉, 세법이 국가재정 총당의 역할과 간접 지원제도로써 역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성격과 이에 대한 보다 정

교한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세법이 단순하게 수익사업을 열거한 것으로는 시시각각 발달하는 사회속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어 질수 없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이 재정적 수요 총당의 역할 이외에 주요한 역할은 사회적 투명성 확보에 있다. 학술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자금은 공적인 자금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세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다룬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현재 산학협력단이 성격 때문이다. 즉, 국립대학은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다. 모든 국립대학은 법인화의 논쟁에 처해 있으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법인화로 가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현행 세법의 기준으로 볼때 산학협력단이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교 법인화와 산학협력단의 주요 핵심은 경쟁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즉, 경쟁력 있는 대학의 수입재원이 다시 학술연구 진흥 등에 사용되어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수입재원에 대해서도 성격을 파악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술연구용역 진작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여기서 파생된 지적재산권 창출은 지적재산권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 내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공적인 영역을 벗어나 시장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일반기업과 균형을 맞추어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의 세무관련 실태를 거점국립대학교 중심으로 조사하였을 뿐 실제 학술연구용역이 어떻게 운영계산서에 분류되고 계산서 발행 등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사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제시하였을 뿐이다. 산학협력단 규모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증가하는 지원속에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가고 있다. 실무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학술연구용역의 형태에 대해 파악한다면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문돌, 2000, “비영리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유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을순, 2007,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준석, 2009,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총람
- 나승진, 2007, “비영리조직의 법인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노병성, 2005,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박태승, 2004 “학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pp.121-136
- 손원익, 2002,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동서연구」 제8권1호, 연세대학교
- 안진주, 2007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안창남, 1999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연구”, 「경희법학」 제 34권, pp.131-135 경희법학연구소,
- 오경희, 200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오현석, 2007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옥무석, 1999,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 이충협, 2005, “학교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호성, 2005,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주대학교
- 이철재, 2009 「세법강의」, 세경사
- 임상엽·정정운, 2007, 「세법개론」, 상경사
- 최 숙, 2009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정희, 200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2005 대학산학협력백서」 통권 제1호,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2007 대학산학협력백서」 통권 제1호,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창근, 2006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2009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자체평가편람” 교육과학기술부
- Etzkowitz, Henry & Leydesdorff, Loet ,1997, 「University and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London: Pinter.